

2015회계연도 도시교통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I . 제안경위**

1. 제출자 : 서울특별시
2. 의안번호 : 제1180호 및 제1181호
3. 제출일자 : 2016. 5. 10.
4. 회부일자 : 2016. 5. 13.

**II . 제안사유**

-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 등의 규정 에 따라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 무 및 예비비 지출에 등에 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 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 III. 결산 개요

#### 1. 일반회계

##### 가.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11,815	11,815	12,005	11,997	8	-	8	101.5	99.9

- 2015년 세입예산현액은 118억 15백만원이었으나,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하철 건설부채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118억 15백만원) 및 임대사용료 수입 등 총 120억 5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었음
- 징수 결정액 중 119억 97백만원을 수납하였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5%로 전년도(101.1%)에 비해 증가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99.9%로 전년도(99.9%)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나.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변경 사용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815,809	- 2,060	-	-	-	817,869	817,409	-	460 (0.05)

- 예산현액은 8,178억 69백만원으로, 이중 99.9%인 8,174억 9백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05% 인 4억 60백만원이 발생되었음

이는 2014 회계연도 예산현액 8,392억 67백만원 중 1억 65백만원(0.01%)이 불용된 것과 비교할 때 불용액은 2억 95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예산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8,178억 69백만원 대비 0.05%인 4억 60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불용률 0.01%(1억 65백만원)에 비해서 감소하였음
- 발생 원인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메르스 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 4억 60백만원

##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1건에 20억 60백만원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메르스 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 20억 60백만원

## 2. 특별회계

### 가. 교통사업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1,154,129	49,025	1,203,154	1,214,188	1,172,878	41,593	1,472	40,121	97.5	96.6

- 예산현액은 1조 2,031억 54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혼잡통행료 및 주차장 수입 등 사업수입 623억 33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208억 51백만원, 타회계 전입금 8,135억 42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1,897억 63백만원 등임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110억 34백만원이 많은 1조 2,141억 88백만원이 징수결정되었고, 이중 1조 1,725억 95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율은 예산현액대비 97.5%로

전년도(100.8%)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6.6%로 전년도(96.9%)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사용	전용	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1,067,715	18,425 ±959	679 -679	1,493 -1,493	35,134 -35,134	1,086,140	985,984	61,168	38,988 (3.6)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조 677억 15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84억 25백만원을 합한 1조 861억 40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9,859억 84백만원, 이월액은 611억 68백만원, 집행잔액은 389억 88백만원임

####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총 22건, 14억 93백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은평구 봉산터널 상부회차로내 주차장건설 : 4억 12백만원
  -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예산 : 3억 55백만원
  -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2억원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총 7건, 6억 79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택시 장기 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사업 : 3억원
  -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거 센터 운영 : 1억 46백만원

### 【이 체】

- 예산 이체사용은 총 5건, 351억 34백만원으로 모두 조직 개편에 따라 이체된 것이며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음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349억 57백만원
  - 자동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 1억 77백만원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만 있으며 명시이월은 35건, 599억 3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 총 12억 3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을 합친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 861억 40백만원 대비 5.6%인 611억 69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이월률 1.6%와 비교할 때 증가하였음

※ 주요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운수업계(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 250억원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 59억 88백만원
-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 47억 74백만원
- 도로교통소통개선 : 43억원
-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 37억 85백만원

※ 주요 사고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 7억 67백만원
- 공공자전거 운영 : 3억 18백만원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89억 88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6% 규모로 전년도 불용률 2.1%(243억 97백만원)와 비교할 때 증가하였음
- 발생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80억 21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 182억 88백만원
  - 예비비 : 26억 13백만원
  - 예산절감 : 65백만원

##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2건, 9억 59백만원이 지출결정 되었으며, 그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배상금 등 통계목 : 8억 94백만원
  - 인력운영비 의 보수 통계목 : 50백만원

## 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22,180	37,880	60,060	81,004	62,044	18,960	-	18,960	103.3	76.6

- 예산현액은 600억 60백만원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이 77억 78백만원, 광역교통시설개선부담금 18억 16백만원, 국고 보조금 등 59억 94백만원 등이 있음
- 수납액은 620억 4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00억 60백만원 대비 103.3%, 징수결정액 810억 4백만원 대비 76.6%이며 미수납액은 189억 60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1.6%, 징수결정액 대비 23.4%임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16,920	-	300 -300	-	16,920	15,349	223	1,348 (8.0)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인 169억 20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53억 49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48백만원임

#### 【예산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1건, 3억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 3억원

####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만 총 2건, 2억 23백만원 발생하였으며 그내역은 다음과 같음
  -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 1억 31백만원
  - 신내역 복합환승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 92백만원

####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3억 48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8.0%

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전년도 불용률 11.9%(18억 78백만원)와 비교할 때 감소한 것임

○ 발생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예비비 미사용액 : 12억 94백만원
- 예산 집행 잔액 : 54백만원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률	
						결손 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C/A)	(C/B)
44,841	-	44,841	44,841	44,841	-	-	-	100	100

○ 예산현액은 448억 41백만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임

○ 수납액은 448억 4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예산현액 전액이 수납되었음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률)
193,799	-	814 -814	-	193,799	193,799	-	0 (0)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1,937억 99백만원으로 지출액은 1,937억 99백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 【예산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1건, 8억 14백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9호선 재정지원 : 8억 14백만원

####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집행잔액】

- 해당사항 없음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 라. 도시개발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 2) 세출결산

####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변경 사용	전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응률)
200	3,400	-	-	3,600	143	84	3,373 (93.7)

- 예산현액은 당초예산액 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합쳐진 36억원이며 지출액은 1억 43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73백만원임

#### 【예산이용 · 전용 ·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 【이월사업비(명시이월)】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명시이월 1건, 84백만원임

#### ※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한양도성안(삼일대로) 도로공간 재편 사업 : 84백만원

###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3억 7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93.7%에 해당하는 규모임
- 발생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3억 38백만원
  - 예산집행잔액(낙찰차액 등) : 35백만원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 IV. 검토의견

### 1. 세입·세출결산 개요

#### 가. 서울시 전체 총괄

##### 1)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회계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 이월액	비율	
						(C/A)	(C/B)
합 계	27,112,104	30,383,753	28,715,600	143,040	1,525,112	105.9	94.5
일반회계	19,213,944	22,029,586	20,482,828	139,164	1,407,594	106.6	93.0
특별회계	7,898,160	8,354,167	8,232,772	3,876	117,518	104.2	98.5

- 2015 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조 2,139억 44백만원과 특별회계 7조 8,981억 6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조 1,121억 4백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일반회계 20조 4,828억 28백만원, 특별회계 8조 2,327억 72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조 7,1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9%, 징수결정액 대비 94.5%가 실수납됨

## 2)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 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집행잔액	
				금 액 (B)	비 율 (B/A)	금 액 (C)	비 율 (C/A)
합 계	27,112,104	25,895,664	25,521,635	781,763	2.9	808,706	3.0
일반회계	19,213,944	18,620,888	18,448,024	314,923	1.6	450,997	2.3
특별회계	7,898,160	7,274,776	7,073,611	466,840	5.9	357,709	4.5

- 2015 회계연도 서울시 세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19조 2,139억 44백만원과 특별회계 7조 8,981억 60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7조 1,121억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25조 5,216억 35백만원(94.1%)을 지출하고, 7,817억 63백만원(2.9%)을 이월하였으며, 8,087억 6백만원(3.0%)을 불용하였음

### 나. 도시교통본부 총괄

- 도시교통본부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등 4개의 회계로 총 세입결산액(수납액)은 1조 2,914억 78백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조 126억 84백만원임

## 1) 세입결산

- 도시교통본부의 2015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1조 3,520억 39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1조 3,198억 70백만원) 대비 102.4%임

징수결정액 중 1조 2,914억 77백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95.5%), 605억 61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4.5%)

### 〈2015년도 세입예산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D)	미수납액 비율(D/B)
계	1,319,870	1,352,038	1,291,477	60,561	4.5
일반회계	11,815	12,005	11,997	8	0.1
교통사업특별회계	1,203,154	1,214,188	1,172,595	41,593	3.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060	81,004	62,044	18,960	23.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44,841	44,841	44,841		-

## 2) 세출결산

- 2015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에서 총 2조 1,183억 28백만원으로 이 중 2조 126억 84백만원이 지출(95.0%)되고, 614억 76백만원이 이월(2.9%)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41억 68백만원(2.1%)임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8,178억 69백만원으로 이중 8,174억 9백만원이 지출(99.9%)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4억 60백만원(0.1%)임

※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법정전출금 : 4,236억 85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일반전출금 : 3,009억 36백만원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계정, 주차장관리계정, 교통개선분담금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교통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1조 861억 40백만원임

이 중 지출액은 9,859억 84백만원(90.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11억 69백만원(5.6%)이고, 집행잔액은 389억 88백만원(3.6%)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운수업체(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 3,100억 5백만원
- 시내버스 재정지원 : 2,511억 74백만원
- 장애인 콜택시 운영 : 349억 57백만원
- 저상버스 도입 : 217억원
-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사업 : 282억 20백만원
-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 179억 49백만원
- 천호대로 버스전용차로 확충 및 도로확장 : 131억 97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 119억 48백만원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시교통본부 소관의 광역철도 건설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69억 20백만원임
- 이중 지출액은 153억 49백만원(90.7%)으로 이월액은 2억 23백만원, 집행잔액은 13억 48백만원(8.0%)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 139억 8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도시철도 운영관련 사업비와 공사전출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1,937억 99백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937억 99백만원(100%)이며, 집행잔액은 없음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 587억 44백만원
- 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 : 572억 39백만원
-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설치 : 195억 5백만원
-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 141억 6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출하는 회계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목적으로 도시교통본부에 2015 회계연도부터 신규 편성되었으며 2개 사업이 도시교통본부 결산 대상임

예산현액은 36억원, 지출액은 1억 43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백만원, 집행 잔액은 33억 73백만원(93.7%)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음

-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시범사업 : 34억원
- 한양도성안(삼일대로 등) 도로공간 재편 : 2억원

###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예산액	전년도 이월	예 비 비	변경 사용	전 용	이체	지 출 액 (B)	이 월 액 (C)	집행잔액
계	2,118,328	2,094,443	21,825	2,060 ±959	1,793 <sup>±</sup>	±1,493	±35,134	2,012,684	61,475	44,169
일반회계	817,869	815,809	-	2,060	-	-	-	817,409		460
교통사업 특별회계	1,086,140	1,067,715	18,425	±959	± 679	±1,493	±35,134	985,984	61,168	38,988
광역교통 시설 특별회계	16,920	16,920	-	-	±300	-	-	15,349	223	1,348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특별회계	193,799	193,799	-	-	±814	-	-	193,799		
도시개발 특별회계	3,600	200	3,400	-	-	-	-	143	84	3,373

주) 회계내 예산변경, 전용 및 이체의 증감액은 동일함

## 2. 주요사안별 의견

### 가. 세입관련 사항

- 일반회계를 포함한 4개 회계에서의 실제수납액은 1조 2,914억 78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3,520억 39백만원 중 605억 61백만원이 미수납(징수결정액 대비 4.5%)되었음

#### 1) 일반회계

-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예산현액 118억 15백만원에서 1억 90백만원이 증가한 120억 5백만원을 징수결정해 수납하였으며 8백만원이 미수납(징수결정액 대비 0.1%) 되었음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2014년 대비 20.0%(30억 3백만원) 감소한 것은 동 금액만큼 지방채 상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액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미수납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당해연도 미수납액(B)	결손처분	미수납액 비율 (B/A)
2012	21,646	21,646	0	0	0.0
2013	20,051	20,014	38	0	0.2
2014	15,008	15,001	7	0	0.1
2015	12,005	11,997	8	0	0.1

## 2)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1조 2,031억 54백만원이고,징수결정액은 1조 2,141억 88백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1,725억 95백만원임

미수납액은 415억 93백만원(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3.4%)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최근 3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당해연도 미수납액(B)	결손처분	미수납액 비율 (B/A)
2013	1,349,628	1,281,933	67,695	739	5.0
2014	1,324,619	1,283,327	41,292	976	3.1
2015	1,214,188	1,172,595	41,593	1,472	3.4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의 미수납액은 주로 일반부담금에서 23억 95백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서 8억 26백만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 두가지 세입사업에 대한 미수납액 감소를 위한 중점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한편, 2015 회계연도 결손처분액은 14억 72백만원이 발생하여 전년도에 비해 50.8%(4억 96백만원) 증가하였음.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과태료의 결손처분액(11억 76백만원)이 전체 중 79.9%를 차지하고 있어 결손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

버스전용차로 위반자 과태료 결손처분액 대부분(11억 74백만원, 99.8%)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압류절차를 통한 채권 확보 등을 시행함으로써 지방세 징수를 위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등 미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을 최소화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임<sup>1)</sup>

###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600억 6천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은 각각 810억 4백만원, 189억 60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은 23.4%인 것으로 나타났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과다한 차이는 징수결정시기와 납부기한의 장기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세입 추계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2015년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동 회계내의 미수납액 전액은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들이 사업추진 조건으로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일반부담금에서 발생하였으며,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부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임

---

1)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제40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96조(결손처분)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결손처분)

### 〈최근 3년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당해연도 미수납액(B)	결손처분	미수납액 비율 (B/A)
2013	46,344	26,161	20,182	-	43.5
2014	64,252	41,505	22,747	-	35.4
2015	81,004	62,044	18,960	-	23.4

#### 4)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448억 41백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48억 41백만원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음

#### 나. 세출관련 사항

##### 1) 예산의 이월에 대한 의견

- 2015년 결산결과 이월은 총 614억 7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611억 68백만원 중 명시이월 35건 599억 38백만원, 사고이월 6건 12억 3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1건 84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2건 2억 2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현액 1조 861억 40백만원 대비 5.6%인 611억 68백만원이 이월됨

이월액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월액과 이월률이 급격하게 증가함  
2015년 출납폐쇄 기간이 당초 다음해 2월에서 매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이 크게 증가함을 고려할 때 다음 회계연도에는 감소추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월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이월액 (B)	이월률 (B/A)
2013	1,087,096	17,178	1.6
2014	1,140,584	18,425	1.6
2015	1,086,140	61,168	5.6

- 「CCTV카메라 디지털 교체사업(경찰청)」은 교통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대시민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아날로그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를 디지털화 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34억 2백만원 중 28억 36백만원 (83.4%)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은 그간 시의회의 지적<sup>2)</sup>으로 서울시 ‘물품관리시스템’에 CCTV카메라 293대가 등재됨으로써 서울시의 소유로 전환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서울시와 CCTV제어권한공유”에 대한 입장<sup>3)</sup> 및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sup>4)</sup>를 공식적으로 받은 바 있음

그러나 2015년 2월 디지털 시스템 전환 1차 사업 준공 후 종합교통정보센터의 끊김 현상 등 하자 발생으로 2차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명시이월 되었을 뿐만 아니라 CCTV제어권한 공유 조치도 늦춰지고 있는 실정인 바, CCTV제어권한의 조속한 공유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시스템 구축 관리 및 일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sup>5)</sup>」,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sup>6)</sup>」,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

2) 제242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2013년 예산안 예비심사, 제250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2014년 예산안 예비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시교통본부)

3)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32745(2014.11.25.) :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디지털 시스템 전환 1차사업 진행중으로 2016년 3차 사업에 UTM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시스템 보안이 확보되면, 서울시에 제어권을 제공하여 공유할 예정이나, 경찰 중요업무 등 외부 보안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1684(2016.4.29.)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용 CCTV카메라 설치·운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심의안건(외부기관에의 교통정보CCTV 카메라 제어권 공유에 관한 사항 - 서울시 통합재난상황실 제어권 부여)에 대해 심의위원 5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

5)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685-46 외 2필지  
규 모 : 지상 3층, 지하 3층, 연면적 13,769㎡, 주차 250면(대형 17)  
사업기간 : 2014년 4월 ~ 2016년 4월  
총사업비 : 23,368백만원(시비 9,807백만원 / 구비 13,561백만원)

6) 위 치 : 종로구 명륜길 28(명륜3가 1-21번지)  
규 모 :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4,831㎡, 주차 103면(공동주차장 101면, 부설주차장 2면)  
사업기간 : 2013년 2월 ~ 2017년 10월  
총사업비 : 11,848백만원(시비 5,924백만원 / 구비 5,924백만원)

건설7)」 사업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각각 47억 74백만원(57.8%), 10억원(100.0%), 37억 85백만원(100.0%)를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들은 각각 사업초기 주변 건물 건축주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진단 등 민원에 대한 협의기간 소요, 주민편의시설(헬스장) 추가 등 사업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전 현상설계 공모기간(4개월 이상) 추가 소요 등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2015년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 비율	사업 준공일정 변경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8,255	4,774	57.8	'15.12월→'16.4월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00	1,000	100.0	'16.12월→'17.10월
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785	3,785	100.0	'15.12월→'17.6월

과거 지하주차장 및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들의 경우 지역 주민의 반대 등 돌발 상황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어 예산의 이월 또는 불용이 빈번히 발생한 바 있어 매년도 예산 편성시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 바, 서울시는 동 사업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7)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174-1외 9필지  
 규 모 :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7,357㎡, 주차 199면  
 사업기간 : 2014년 10월 ~ 2017년 6월  
 총사업비 : 8,808백만원(시비 5,285백만원 / 구비 3,523백만원)

- 「정릉동 친환경차고지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은 기존 정릉동 공영차고지 철거 후 본래 공영차고지 기능은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3억 60백만원 중 3억 52백만원(97.8%)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은 '14.10월 투자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83억 60백만원 규모로 '1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려 했으나, '14.12월 학술용역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15.5월 국제공모운영 사업에 포함되어 '16년 5월에야 공모당선작이 발표되는 등 사업이 파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학술용역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분	당 초 ( '14년 투자심사 결과)	변 경 ( 학술용역 결과)	비 고
기간	2015.1~2016.12	2015.1~2017.12	
내용	건축연면적 총 2,520㎡	건축연면적 총 4,681㎡ 건설사업관리(책임관리) 국·내외 설계공모 추진	
사업비	총 83억 60백만원	총 124억 60백만원	41억원 증액

동 사업은 기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서울시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파행 추진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원칙과 절차에 맞게 행정을 처리함으로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도심보행길 조성 사업」은 사대문안 역사·문화·쇼핑 등 도심 주요 명소를 연결하는 도심보행길(프로머나드) 기본노선을 선정하고 보행자 안내체계와 시설정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5억원 중 4억 66백만원(93.2%)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은 '14년에 추진한 시범사업<sup>8)</sup>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5년 핵심과제 집중회의<sup>9)</sup>이후 스토리텔링 발굴 및 BI<sup>10)</sup>를 활용한 안내체계 개선을 추가 반영 등의 이유로 '15년 8월에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됨<sup>11)</sup>

스토리텔링 발굴 등을 위한 용역이 조속히 발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검토와 대처가 부진하여 사업이 지연된 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도성안 도로 공간 재편을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매뉴얼 작성 및 보행환경개선공사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22억 71백만원 중 21억 92백만원(96.5%)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79백만원(3.5%)을 불용하였음

8) 보행자전거과-8888(2014.8.6.)

- 주요내용 : 도심보행길(프로미나등)의 정의, 해외사례(요코하마 개항의 길 등) 5개 축 선정, 1개축(횡1노선) 시범사업 시행

9) 보행친화도시 추진사항 핵심과제 집중회의(2015.3.5.), 보행자전거과-11405(2016.8.31.)

10) BI = Brand Identity

11) 보행자전거과-11405(2016.8.31.)

동 사업은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용역 분야와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작성 분야를 각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 중 담당부서 변동 등<sup>12)</sup>으로 인한 사업지연으로 인해 명시이월되었는 바,

사업 부서간 효율적 통합관리를 통해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업지연과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 「도로교통 소통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도시고속도로 주요 정체지점에 대하여 개선 및 상습정체, 사고다발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각각 4억원(37.5%), 43억원(55.7%), 11억 20백만원(26.8%)을 명시이월 하였음

동 사업들은 사업진행과정에서 각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각종 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연 등에 의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한 것임

12) 사업내용 :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작성, 용역결과에 따른 시범지역 개선  
 사업기간 : '15.3.30 ~ '16.7.31(16개월)  
 총사업비 : 2,271백만원,

사업내용		예산	담당부서	비고
학술용역	‘보행친화도시 시즌2’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482백만원	보행자전거과 → 교통정책과	- 업무이관 '15.2.3 - 예산 재배정 요청 : '15.2.16
	가로설계·관리 매뉴얼 작성		보도환경개선과	
시범지역 공사		1,710백만원	보행자전거과	

## 〈2015년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이월비	사업 준공일정 변경
도시고속도로 기능개선	1,067	400	37.5	'15.12월→'16.12월
도로교통 소통 개선	7,720	4,300	55.7	'15.12월→'16.12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175	1,120	26.8	'15.12월→'16.6월

따라서, 사업시행 초기부터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통해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공사의 중단 또는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은 위례신도시 등 현릉로 주변 개발 사업시행으로 교통수요가 증가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4년 예산현행 7억원 중 6억원(85.7%)을 사전절차 이행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음

당초 계획에 따르면 동 사업은 '14년 LH공사의 사업추진요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례신도시 입주 완료시기에 맞춰 '15.6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음<sup>13)</sup>

그러나 '15.6월 시행할 계획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사전절차인 투자심사 및 사업비 납부 관련 협약서 체결 지연으

13)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사업 관련 사업예산 납부일정 협의(교통운영과-10357, 2013.6.1.)

로 '15.12월까지 지연<sup>14)</sup>되고 투자심사 의뢰시 받아야 될 중  
기지방재정계획을 미반영한 함

동 사업은 사전절차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부진하여 이  
월 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시에는 사전 추진절차를 조속히  
이행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된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시스템 운  
영을 통해 교통소통 원활과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30억 17백만원 중 13억  
65백만원(45.2%)를 이월하였음

동 사업 중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 및 확대사업을 추진에 책  
정된 예산 21억 35백만원 중 사업 선급금 5억 30백만원을  
제외한 13억 65백만원(63.9%)을 사전절차 및 유관기관 업  
무협의를 지연등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함

특히, 센터제어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  
아 사례조사 및 자문회의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방침<sup>15)</sup>이  
'15.7월에 세워지고 사업 계약이 '15.11월로 미루어짐<sup>16)</sup>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절차 및 검토가 면밀히 이행되어

---

14) 현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설치사업 관련 사업 추진사항 알림(교통운영과-2341, 2013.2.5.)  
- 과업기간 : '16.1.18 ~ '16. 12. 12 - 계약업체 : (주)신성엔지니어링,(주)도화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267,000천원

15) 교통정보과-11614(2015.7.17.)

16) 교통정보과-18249(2015.11.12.)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이월액 5억원 이상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계정	사업명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률	이월사유
교통 관리 계정	CCTV카메라 디지털 교체사업(경찰청)	3,402	2,836	83.4	사용지방경찰청 CCTV 기종 변경 등 사업 착수 지연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 불가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940	767	81.6	공사계약 체결하였으나 동절기 굴착 통제로 공사가 중지됨
	운수업체(버스) 유가보조금	10,803	1,130	10.5	'15.12월 사용한 경유사용분에 대해 '16.1월 정산 후 지급하는 것으로 당해연도 지급이 불가
	운수업체(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310,005	25,000	8.1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후 카드사업에 정산지급하는 것으로 '15.12월에 대해 당해연도 지급이 불가
	도심내 자전거도로망 확충	1,703	1,563	91.8	교통안전시설 설치 협의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공법 변경 등으로 공정기간 절대부족
	도심권 보행환경 개선	2,271	2,192	96.5	사업의 시행노선 선정, 교통영향분석 및 타당성 평가, 기본 및 실시계획 등 공정기간 절대부족
	도로교통소통개선	7,720	4,300	55.7	교통안전시설심의 지연,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업무협의 지연, 지장물 이설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175	1,120	26.8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지연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친호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충	13,197	891	6.8	도로확장 공사 완료시점에 맞춰 중앙버스전용차로 설계사행(2015년 11월 발주)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 개선	1,637	862	52.7	종로, 남대문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설계용역 발주 지연 등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6,340	5,988	94.4	실시설계 완료 후 사전절차에 기간이 소요되어 공사발주 지연에 따른 공정기간 절대부족
주차장 관리 계정	용산구 한남동 공영주차장 입체화 건설	8,255	4,774	57.8	'16.5월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 추진을 위한 잔여 사업비 명사이월 필요
	명륜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000	1,000	100.0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용역 기간 연장, 사전절차 수행에 기간 소요로 연내 공사계약이 불가
	친호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785	3,785	100.0	설계공모 기간 소요로 설계용역 발주 지연 및 설계심사 및 계약심사 등 절차수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연내 공사계약이 불가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3,017	1,365	45.2	'15년 사업준공 어려워 '16년으로 명시이월하고 계약체결 후 선금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15.12.31일 계약체결됨
교통개선 분담금계정	현릉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700	600	85.7	위례신도시 입주시기에 맞춰 사업완료 요청함에 따라 설계용역 시행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신내역 복합환승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사업은 경춘선, 경전철 면목선, 6호선 연장선의 환승역인 신내역의 통합환승 시설 건립과 최적의 경전철 면목선 차량기지 위치 선정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2억원 중 93백만원 (46.5%)을 사고이월 하였음

동 사업은 예산 편성 당시 '15.1월부터 3월까지 용역 발주 및 계약, '15.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시행한다는 일정 계획을 제출<sup>17)</sup>한 바 있으나, 특정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가 '15.6월에서야 비로소 용역시행 방침이 수립<sup>18)</sup>되었고, 단독응찰에 따른 2차례<sup>19)</sup> 입찰 공고 후 8월에 수의 계약으로 용역계약이 체결<sup>20)</sup>되었음

동 사업은 전반적인 사업 관리가 미흡하여 사고이월 된 것이므로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기존 수립한 일정 계획에 맞게 사업을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고이월을 방지해야 할 것임

17) 201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pp.45~47

18) 「신내역 통합환승시설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계획」, 교통정책과-11320(2015.6.2.)

19) 1차 공고 : 2015.7.13~7.30 / 2차 공고 : 2015.7.31.~8.15

20) 계약업체 : (주)동해종합기술공사 / 계약금액 : 1억 85백만원 / 계약기간 :

[당초]2015.8.25.~2016.2.22.(182일)

⇒

[변경]2015.8.25.~2016.4.30.(250일)

## 2) 예산의 불용에 대한 의견

- 2015년 결산결과 불용은 일반회계에서 4억 60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3,893억 88백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3억 4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33억 7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441억 68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청라~강서간 BRT사업 운영손실금 지원」 사업은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협약서<sup>21)</sup>를 근거로 청라~강서간 BRT사업<sup>22)</sup>의 운영손실을 이용객수 비율에 따라 3년간<sup>23)</sup> 한시적으로 3개 시·도가 분담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1억 82백만원 중 39백만원(21.4%)을 불용하였음

### 〈“협약서 제4조(손실보전 분담기간 및 범위)” 지자체별 손실보전 상한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총 상한액	2,060	466	1,347	247
1년차 상한액 (2013.7.11~2014.7.10)	802.5	182	524.5	96
2년차 상한액 (2014.7.11~2015.7.10)	692	156.5	452.5	83
3년차 상한액 (2015.7.11~2016.7.10)	565.5	127.5	370	68

21) 청라~강서간 BRT 시범사업(1단계) 운영 손실보전분담 협약서(2014.7월)

22) 사업목적 :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시간 교통 편의 제공  
 총 연 장 : 23.1km(서울시구간 4.5km, 인천시구간 12.4km, 부천시구간 6.2km)  
 운 영 : 개통시(2013.7.11)부터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 중

23) 손실보전 분담 기간 : 2013.7.11.~2016.7.10[3년간]

동 사업은 인천시가 '13.7.11~'14.7.10까지의 운영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협약서상 손실보전 상한액을 편성하는 등 2015년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과편성한 것에 대해 시의회로부터 지적<sup>24)</sup>을 받은 바 있음

서울시는 청라~강서간 BRT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에 대해 운영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독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과편성에 따른 불필요한 불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택시 감차보상 지원」 사업은 초과 공급된 택시면허대수에 대해 택시업계의 자율감차를 유도하기 위한 감차보상비<sup>25)</sup>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76억 83백만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 추진 전부터 택시업계는 시중에서 거래되는 택시 1대당 권리금이 60백만원에서 80백만원을 호가하고 있어 택시 감차보상비 13백만원은 자율감차 유도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며, 결국 '15년에는 자율적 감차 신청이 단 1대도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임

한편 법령상 택시 감차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바, 자율감차가 택시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여타 민간사업과

24) 제257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

25) 택시 감차비용 대당 13백만원 지원(국비:시비=30%:70%)

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동 사업의 추진 여부도 원점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도심 관광버스 주차장 건설」 사업은 도심 내 관광버스 주차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위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상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버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4억 13백만원 중 3억 49백만원(84.5%)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당초 다산로와 장충단로에 각각 15면, 10면의 관광버스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차량통행 불편 초래 및 보도축소에 따른 보행자 불편 등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극심하여 결국 장충단로에만 5면의 관광버스 주차장이 설치되었음

동 사업의 경우 사전에 해당 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자체가 무산되거나 축소된 것인 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 협의 등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은 관악권역의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51억 80백만원 중 50억 80백만원(98.1%)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도림천 일대 침수예방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차고지 내 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14.7월 사업계획이 변경<sup>26)</sup>되었고,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sup>27)</sup>됨에 따라 '15.11월 투자심사<sup>28)</sup>를 거치는 등 사업변경에 따른 후속 절차를 수행하느라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음

한편 동 사업은 '14년 사업비 49억 15백만원(명시이월<sup>29)</sup>)했었고, '16년 예산 편성 시점에 동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결과가 결정되지 않아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확정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한 것인 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도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26) 신림공영차고지조성 사업계획 변경, 주차계획과-9426(2014. 7.17)

27) 「지방재정법」(2014. 5.28 개정)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행정차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이 의무화됨(제37조제2항)

28) 「2015년도 11월(수시) 투자심사 의뢰」, 주차계획과-14834(2015.11.4.)

- 사업명 :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 위치 : 관악구 신림동 140-2일대(면적)
- 규모 : 공영차고지 10,232km<sup>2</sup>, 유수지 35,000m<sup>2</sup>, 건축물 1,553.63m<sup>2</sup> 등
- 사업기간 : 2011.1 ~ 2018.12
- 총사업비 : 56,734백만원,

「2015년 수시(11월) 투자심사 결과 알림」, 재정관리담당관-11838(2015.11.13.)

- 투자심사 결과 '적정'

29) 2014년 예산현액 50억원 중 49억 15백만원(98.3%)을 명시이월 하였음

- 「복정역 환승센터 건립」 사업은 '1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확정한 위례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복정역 환승센터의 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20억 전액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수행하는 '복정역 복합환승센터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서 용역 결과를 바탕  
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고, 설계용  
역에 대한 용역 심사를 통해 적정 사업비와 사업의 적정성을  
담보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의회로부터  
지적<sup>30)</sup>을 받은 바 있음

결국 '15.12월이 되어서야 '복정역 복합환승센터개발 기본구  
상 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을 뿐만 아니  
라 국토교통부의 행복주택 포함, 화훼마을 추가 등의 요청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동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것인 바,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절차가 이행되어 계획이 확정되  
는 시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으로써 전액 불용이라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  
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과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 활성화

30) 제257회 정례회 도시교통본부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

화를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  
 현액 217억원 중 10억 39백만원(4.8%)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시비와 국비 매칭사업(시비 60, 국비 40)으로서  
 국토교통부가 통보하는 저상버스 1대당 보조금 단가 및 대수  
 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예산편성 이후 보조  
 금 단가 및 대수가 통보<sup>31)</sup>됨에 따라 사업예산이 불용된 것임  
 이는 서울시가 예산편성 당시 국토교통부와 최종 보조금 단  
 가 및 대수 협의가 완료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예산편  
 성 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조금 단  
 가 및 대수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그에 따른 불용액  
 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한양도성안 도로공간 재편 시범사업」은 한양 도성안 도로  
 를 대상으로 차로를 줄이고 보행·자전거·친환경수단이 안전  
 하게 함께 공존하는 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예산현액 34억원 중 33억 38백만원(98.2%)을 불용하였음  
 동 사업은 '14년 예산현액 50억원 중 34억원(68.0%)이  
 명시이월된 예산사업으로<sup>32)</sup>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구간 중복 방지를 막기 위해 공사추진  
 이 보류된 것임

3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489(2015.2016) 및 교통안전복지과-2040(2015.7.6.)

32) 당초 남대문로와 우정국로가 함께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명동지하상인들의 횡단보도 설치 반대 민원으로 남대문로는 시범사  
 업에서 제외되었고 우정국로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중 주변 지구단위계획, 조계사 및 상가 민원, 서울지방경  
 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 지연등 사업 부진을 이유로 명시이월됨

다만, 견지동 역사문화 관광조성사업의 준공시기를 감안할 때 한양도성안 도로공관재편 사업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4년 공사금액을 명시이월하여 '15년 불용한 것은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간의 유사한 사례를 되풀이한 것으로 서울시는 앞으로 동일 사안 발생하지 않게 상호 지속적인 업무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불용액 10억원 이상인 사업〉

(단위 : 백만원, %)

계정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교통 관리 계정	저상버스 도입	21,700	1,038	4.8	국고보조금이 편성된 예산 대비 감액 (8,680→8,265,△415)됨에 따라 매칭된 시비도 불용(시:국=60:40)
	운수업체(버스) 유가보조금	10,803	1,734	16.1	경유차량이 CNG 차량 전환추세로 예측한 것보다 지급대상이 감소(782대→750대,△32)
	운수업체(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310,005	3,819	1.2	운영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 지급하였으며, 지급 후 잔액(불용률 1.2%)이 발생함
	택시 감차보상 지원	7,683	7,683	100.0	'15년 1,2차 택시 감차위원회에서 감차를 위한 감차 계획 수립 및 대당 감차보상금 등을 확정하여야 하였음에도 감차위원인 사업자들이 감차사업
	신림공영차고지 건설	5,180	5,080	98.1	시설물추가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으로 '14년에 이월된 예산은 불용처리후 '16년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중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3,360	1,141	34.0	예산현액에 국비 가내시 감소금액 (913백만원) 미 반영된 것으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사업	1,357	425	31.3	예산폐쇄기한이 임박하여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규 제증인결과 통보, 이후 동절기 굴착금지기간으로 사업시행연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1,948	1,628	13.6	공공운영비에 포함된 유지관리 용역(10건)의 낙찰 차액
	도시지역광역 교통정보 기능확충	2,425	2,353	97.0	감사원 감사결과 UTIS 사업 확대 중단 및 기 구축한 시설물은 재활용 방안을 마련 타당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요구함에 따라 잔여예산 불용 처리
주차장 관리 계정	인력운영비 (시간제계약직)	9,273	1,420	15.3	시간선택제임기제 단속공무원성 관련 정원에 따른 예산편성시점 대비 집행 시점에서 집행잔액 충도되지발생으로임금및초과근무수당등잔액발생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불용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 169억 20백만원 대비 8.0%인 13억 4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비비의 집행잔액임

###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에 대한 의견

#### 가. 예산의 이용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의 전용

- 2015년 결산결과 예산의 전용은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전용액은 총 22건에서 14억 93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최근 3년간 전용액 및 전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예산사용과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전용 감소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용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전용액 (B)	전용률 (B/A)
2013	11,902	2,165	18.2
2014	37,542	1,510	4.0
2015	96,127	1,493	1.6

##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전용액	사 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합 계	총 22건		1,493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40	서울역 환승센터 내 택시승차대 계약취소 수수료 지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단위사업간 또는 단위 사업내 목그룹간 예산 전용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차계획과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	구로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200	구로4동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지반침사 및 가시설 보강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확보	
주차계획과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건립	은평구 봉산터널 상부 회차로내 주차장 건설	412	은평구 봉산터널상부 주차장건설 편의시설 설치비 부족분 확보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운영	공공자전거 운영	243	공공자전거 운영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확보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운영	공공자전거 운영	107	공공자전거 운영 자전거 구입비 등 부족예산 확보	
보행자전거과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 조성	200	자체 계획 사업으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	

-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은 올바른 택시교통문화 홍보, 고객 맞춤형 택시 시범도입·운영, 택시 승차거부 행위 특별단속 및 제도 등을 통해 서울택시에 대한 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역 환승센터 내 택시승차대 개선공사' 시설비 확보를 위해 2015년 예산현액 1억 25백만원 중 40백만원(32.0%)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였음

다만 ‘서울역 환승센터 내 택시승차대 개선공사’는 ’15.4월 현장시장실 운영 중 신규로 발생한 사업으로 내부방침<sup>33)</sup>을 근거로 예산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음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한 사업 확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sup>34)</sup>하고 있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시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내부방침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것인 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새로운 자전거 문화교육」 사업은 자전거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교육을 통한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예산현액 2억 20백만원 중 20백만원(9.1%)를 전용하여 노후화된 실습용 자전거 80대를 교체하는 데 사용함

실습용 자전거 전체 210대 중 110대(52.4%)가 ’09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5년)이 경과된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음에도 자전거 교체비용에 대한 예산을 미리 책정하지 않음 이는 서울시가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지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33) 「서울역 앞 택시 대기차로 개선 계획(안)」, 택시물류과-14248(2015.5.22.)

「서울역 앞 택시 대기차로 개선을 위한 소요 예산 확보 및 시공계획」, 택시물류과-18813(2015.7.7.)

34)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확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다. 예산의 이체

- 2015년 결산결과 예산의 이체는 모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고, 이체액은 총 5건에서 351억 34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이체액	사 유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총 5건			35,134		
택시물류과	교통정보과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2	2015.1.1.일자 조직개편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해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택시물류과	교통정보과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175		
보행자전거과	택시물류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5		
보행자전거과	택시물류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32,951		
보행자전거과	택시물류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2,000		

## 라. 예산의 변경

- 2015년 결산결과 예산의 변경은 총 9건, 17억 93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이 중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건, 6억 79백만원이 발생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1건 3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건 8억 14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5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변경액	사 유	근 거	
	변경전	변경후				
<b>합 계</b>	<b>총 9건</b>		<b>1,793</b>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교통혼잡지역 교통현황 모니터링	교통특별 대책추진	20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확보 목적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 변경 (행정안전 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교통정책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45	보수 부족분 확보 목적	
	교통정책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39	보수 부족분 확보 목적	
	버스정책과	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버스 서비스 품질평가	29	버스피업관련 전세버스 계약취소수수료 지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택시물류과	택시 장기 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택시 장기 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300	택시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의 이차보전금 확보	
	주차계획과	장지공영차고지 지하화 검토	장지공영차고지 지하화 검토	100	공영차고지 지하화를 위한 학술용역비 예산과목 변경	
	보행자전거과	공공자전거 운영	공공자전거 운영	146	자전거 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부족예산 확보	
광역교통 시설특별 회계	교통정책과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300	영동대로 일대 지하공간의 개발방안 마련 용역수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도시철도건설사 업비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지하철 9호선2,3단계구간 위탁운영 관리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814	9호선개화역 승강장 안전문 설치비용 확보	

- 최근 3년간 예산변경의 연도별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변경액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최근 3년간 교통사업특별회계 변경액 증감추이〉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변경액 (B)	변경률 (B/A)
2013	18,719	445	2.4
2014	21,047	671	3.2
2015	26,039	1,793	2.6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광역철도건설비 부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시행 중인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서울시 부담금을 적기에 납부토록 하여 수도권 교통난 완화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및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용역<sup>35)</sup>’ 수행을 위해 2015년 예산현액 139억 8백만원 중 3억원(2.2%)을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변경하였음
- 향후 6개의 광역·도시철도 노선이 영동대로 지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주변개발 계획에 대비한 교통시설 설치, 예산절감·시민불편해소·지하공간개발 등을 고려한 통합역사 설치 등 종합적인 구상 및 계획 마련을 위해 동 용역 수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나,

35) 삼성역 일대 통합역사 및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용역

- 용역업체 : (주)유신 / 계약금액 : 261백만원 / 용역기간 : 2015.09.15.~2016.5.15.

동 용역의 경우 내부방침<sup>36)</sup>을 근거로 예산변경을 통해 추진한 신규 사업이며, 이는 시의회의 예산 심의를 통한 사업 확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sup>37)</sup>하고 있는 시의회의 고유권한인 점을 고려할 때 시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내부방침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의회의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것인 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영동대로 지하 6개 철도노선 계획 현황〉

구분	사업명	연장 (km)	구간	추진 현황
확정 노선	삼성동탄 광역철도	39.5	삼성~동탄	- 삼성역 : 통합역사와 연계개발
	GTX-A	36.4	킨텍스~삼성	- 기본계획 수립 중
	위례신사선	14.8	위례~신사	- '16년 상반기 민간제안 예정
검토 노선	GTX-C	45.8	금정~의정부	- 예비타당성조사 중(KDI)
	KTX연장	31.7	수서~의정부	- 예비타당성조사 중(KDI)
	남부광역철도	30.3	당아래~잠실	- 국가철도망 구축 검토 중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사업은 지하철 9호선 사업 재구조화 이후 9호선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사업에서 8억 14백만원을 변경<sup>38)</sup>하여 9

36) 「강남 영동대로 지하 통합환승시스템 구축 및 지하공간개발 기본구상 용역 시행계획」, 교통정책과-12990(2015.6.24.)

37)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2. 예산의 심의·확정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38)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사업(민간위탁금) 2015년 예산현액 16억 2백만원 중 8억 14백만원 (50.8%)을 「지하철 9호선 재정지원」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으로 변경

호선 개화역 승강장 안전문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음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sup>39)</sup>의 경우 정거장 25개소 중 개화역을 제외한 24개소는 지하역사이며 건설 당시부터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였으나, 개화역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종착역인데다 차량기지와 연계된 지상역사라는 점에서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화역에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할 경우 협약서<sup>40)</sup>에 따라 서울시가 설치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지하철 9호선 1단계 건설 사업의 경우 상부부분을 민자사업<sup>41)</sup>으로 추진하였고 건설 당시 개화역까지 승강장 안전문을 설치했다면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바,

향후 민자사업 등 사업 추진시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좀 더

39) 구간 : 개화역~신논현역(25.5km) / 정거장수 : 25개소 / 사업기간 : 2005.5월~2009.7월

40)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구간(상부부분)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2013.10.23.)」 제18조(관리운영비) ⑦ 법령의 변경(제정과 개정을 포함한다)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운영자에게 부록 3 (관리운영비)에 기재된 당해 분기의 관리운영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제3자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비용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와 같은 비용이 관리운영비로 인정될 것과 그 지급시기가 확정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불가항력사유의 경우에는 제38조(불가항력사유의 처리)에서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기로 정한 금액을 관리운영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나 불가항력사유로 말미암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업무

2. 제15조(이 사업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에 따른 업무(공사도급계약 기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상대방이 이행하기로 예정된 업무를 제외한다)

3. 사업시행자가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41) 총사업비 : 3조 5,688억원

- 하부 재정사업 : 2조 4,137억원

- 상부 민자사업 : 1조 1,551억원[재정투자 4,920억원(국비 1,968억원 / 시비 2,952억원),

민간투자 6,631억원(출자금 1,671억원 / 차입금 4,960억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 이후 불필요하게 시설물 추가 설치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4) 예비비지출에 대한 의견

- 2015년 결산결과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총 3건, 25억 44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일반회계에서 1건, 16억원이 발생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건, 9억 44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15년도 예비비 사용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 구분	사 업 명	지출액
	3건	2,544
일반회계	메르스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1,600
교통사업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894
교통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50

- 일반회계의 「메르스관련 대중교통 특별대책 추진」 사업은 메르스 확산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이용 시민의 감염 방지를 통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 16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은 주차장매

매대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변제금으로 8억 94백만원, 「인  
력운영비」 사업은 예산편성 당시보다 상위 직급 현원 증가 등  
으로 지급액이 초과함에 따라 50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임